



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9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1995년 월 일
제출자 : 제천시장

1. 제안사유

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(영제14646호)이 '95. 5.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도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, 관리사항등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사항을 보완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84조 제 2항에 「 중요재산의 범위 」 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(제4조)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
-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 명시
 -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 때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
 -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
- 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 있는 잡종재산의 범위를 읍면지역에서는 400㎡에서 700㎡로 확대

- .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총괄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
- . 관사 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함
 - 전기요금, 수도요금, 아파트 관사 공동관리비 부담 (1급→1, 2급관사)

3. 근거법령

- . 지방재정법 제 77조 및 동법시행령 제 84조 (참고자료 2)
- . 개정조례준칙 시달 (회계 13330 - 1161호 (95. 7. 8))

4. 기타 참고사항

○. 입법 예고

대통령 제 11133호 (83. 5. 21)로 제정된 「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」에 의거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관련 및 경제적부담과 관련되는 조항이 없으므로 입법예고 대상이 아님

○. 예산관련 사항

해당 없음

○. 관계법규 발췌

따로 불입

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

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4조를 삭제한다.

제36조 제1항중 "시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"를 "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"로 하며 "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 및 관리를"을 "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을"로 하고 "변경계획을 작성하여"를 "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"로 하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 다만, 공유립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

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6조의2(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) ①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(도로, 하천등)으로 취득(보상취득)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
③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

제38조의 제1호중 "직할시"를 "광역시"로 하고 "시지역에서는 300㎡이하, 기타지역에서는 400㎡이하의 토지"를 "동지역에서는 300㎡이하, 읍면지역에서는 700㎡이하의 토지"로 한다.

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8조의2(공유재산매각승인)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 받은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55조 제5호 및 제7호,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전기요금(단, 1급.2급 관사에 한함)
7. 수도요금(단, 1급.2급 관사에 한함)
8. 아파트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(단, 1급.2급관사에 한함)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4조(증여재산) ①지방자치법 제35조 제 <u>1항 제6호에 규정된 증여재산이라함은</u> <u>지방재정법시행령 제77조에 규정된 공</u> <u>유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</u> <u>산을 말한다</u></p> <p>1. 1건당 예정가격 2억5천만원이상 2.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천제곱미터 <u>이상</u></p> <p>②토지의 경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<u>면적 이하일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</u> <u>액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증여재산으로</u> <u>본다</u></p> <p>③증여재산의 한계기준으로서 1건이라 <u>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</u> <u>포함한다</u></p> <p>1. 등일한 취득처분 방법으로 등시에 <u>회계절차를 이행할 경우</u> 2.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등일인일 <u>경우</u> 3.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 <u>처분하는 경우</u></p>	<p>제4조(증여재산)</p>

현 행	개 정 (안)
<u>4. 담해 재산에 인접 또는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</u>	
<u>5. 분할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당초에 등일목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경우</u>	
<u>6. 기타 사회통념상 또는 담해재산의 구체적인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	
<p>제36조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<u>시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</u> 제천시의회(이하 "시의회"라한다)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<u>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 및 관리를</u> 하여야 한다. 다만,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<u>변경계획을 작성하여</u>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얻어받은 폐천부지취득과 등 재산을 양여 목적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아니 할 수 있다</p>	<p>제36조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----- ----- 시장이 악년도 예산편성전까지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공유재산의 취득·</u> <u>처분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</u> <u>정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</u> ----- ②(삭제)</p>

현 행	현 행
<p><u>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·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산의 소재지, 지목, 면적과 가격을 익년도 1월 31일까지 일괄하여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④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유립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</u></p>	<p><u>③ (삭제)</u></p> <p><u>④ ----- . 다만, 공유립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한다.</u></p>
<p><u><신설></u></p>	<p><u>제36조의2(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 관리)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(도로, 하천 등)으로 취득(보상취득)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</u></p>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55조(관사운영비의 부담)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.</p> <p>1. - 3.(생략)</p> <p>4. (생략)</p> <p><u>5. 전기요금(단, 1급 관사에 한함)</u></p> <p>6. (생략)</p> <p><u>7. 수도요금(단, 1급 관사에 한함)</u></p> <p><u>8.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(단, 1급 관사에 한함)</u></p>	<p>제56조(관사운영비의 부담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- 3.(현행과 같음) 4. (현행과 같음) <u>5. 전기요금(단, 1.2급 관사에 한함)</u> 6. (현행과 같음) <u>7. 수도요금(단, 1.2급 관사에 한함)</u> <u>8.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(단, 1급.2급 관사에 한함)</u></p>